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00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 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일부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00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3항에 따라 종오리장·부화장에서의 가축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오리(원종오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오리로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종축을 말한다.
2. "종오리장(원종오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종오리를 사육하고, 그 종오리로부터 축산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
3. "부화장"이라 함은 씨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인공부화시설을 말한다.
4. "입식"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5. "계군"이라 함은 동일 부화장 혹은 동일 농장에서 동일날짜에 종오리

농장으로 입식된 종오리 군집을 말한다.

6. "조류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된 종오리장과 부화장에 적용한다.

- ② 계약 등의 관계에 의해 종오리장의 오리를 위탁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요령의 적용을 위하여 해당 종오리장으로 간주한다.

제4조(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오리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오리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
2. 오리바이러스성간염
3. 리메렐라감염증

제5조(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오리의 소유자등은 종오리 및 씨알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씨알 및 오리 병아리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③ 종오리장 또는 부화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종오리장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시 제4조제1항의 이행여부와 종오리 입식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종오리장 또는 부화장에 대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의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 제4조 각 호에 대한 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8조(검사시기) 검사기관의 종오리에 대한 가축전염병 항원검사는 월 1회 이상, 항체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동별로 실시한다.

제9조(시료채취) 종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고, 오리바이러스성간염(3주령 이하) 및 리메렐라감염증의 검사는 각 농장의 동당 폐사축 또는 의심축 5수 이상을 채취하여 실시한다.

제10조(조류인플루엔자 검사방법) ①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한다.

1. 1차 검사 : 경쟁적 효소면역측정법(c-ELISA)

2. 2차 검사 : 조류인플루엔자 H5형 및 H7형 혈구응집억제반응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는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해당 농장의 항원 및 항체 시료 전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사는 별표 3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가축방역기관 중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5형 및 H7형까지 판정 후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검사결과가 H5형 및 H7형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공문으로 양성결과를 보고(통보)하고, 양성 시료에 대하여 병원성 등 최종 확인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리메렐라감염증 검사방법)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리메렐라감염증의 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각각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제12조(조류인플루엔자 판정기준) ① 제9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 H5형 또는 H7형 항체가 검출된 농장은 항체 양성농장으로 판정한다.
2. 항원 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농장으로 판정한다.
3. 항원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농장으로 판정한다.
- ②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검사 결과 비특이 반응에 의한 양성 반응의 경우 해당 농장 전체 사육동에 대하여 최초 시료채취 날로부터 2주 후 항원 및 항체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도록 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리메렐라감염증 판정기준)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1수 이상에서 항원이 검출된 축사는 양성군으로 판정한다.

제14조(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조치) ①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농장에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결과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법 제19조·제28조의2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결과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및 H5형 및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판정 시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가금류 이동 승인서를 농장에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리메렐라감염증 검사결과 조치) ①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리메렐라감염증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각각 별지 제5호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농장에 지체없이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검사결과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양성으로 판정된 종오리가 있는 축사의 종오리군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21일 이상 소독 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검사결과 리메렐라감염증 양성으로 판정된 종오리가 있는 축사의 종오리군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투약, 주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명할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실적의 보고) 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및 리메렐라감염증의 월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사실적을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검사) ①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오리장·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리메렐라 양성농장에 오리 병아리를 공급한 종오리장·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이동승인서의 휴대) ① 법 제16조에 따라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종오리, 씨알 및 부화장에서 분양되는 오리 병아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이동승인서(사본을 포함한다)를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② 종오리에 대한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로 한다. 다만, 씨알 및 부화장에서 분양되는 오리병아리에 대한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40일로 하며, 부화장에서 분양되는 오리병아리 경우에는 씨알 생산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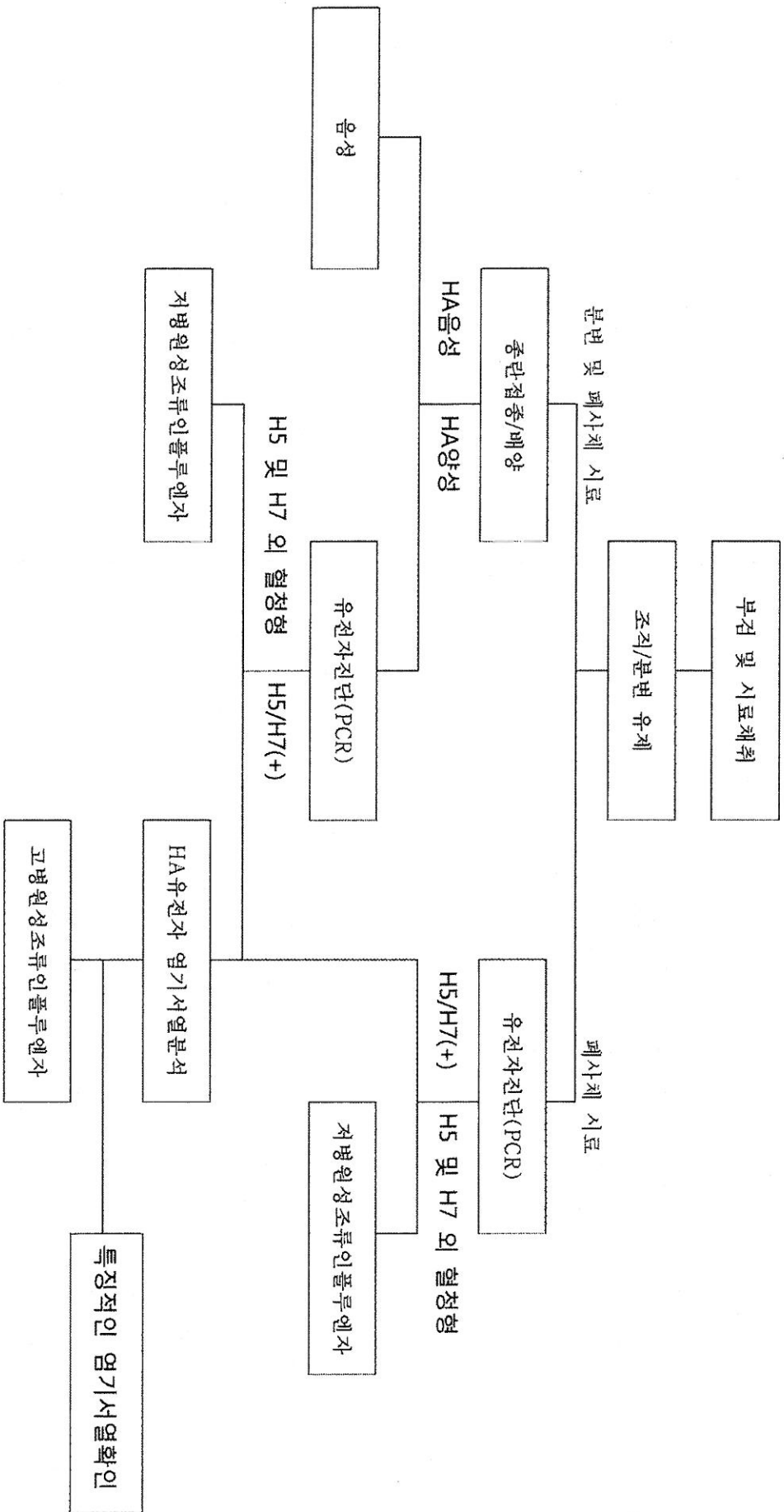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진단 규정에 따른다.
 -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 바이러스를 6주령의 닭에 감염시켰을때 정맥내 병원성 지수가 1.2보다 높거나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내에 6수(75%) 이상 폐사할 경우
 - 나. 분리된 H5나 H7 혈청형 바이러스가 가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HA 유전자의 유전자분절부위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기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경우

[별표 2]

검사시료 채취요령

1.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검사는 검사결과와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별로 20수 이상을 고르게 무작위로 선택하여 혈액 20개(개체당 2ml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산란 중인 종오리의 경우 축사별로 오리알 20개 이상을 수거하여 난황항체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사를 위한 분뇨 시료 채취 방법은 은행 씨알 크기로 채취하되, 50ml 코니칼 튜브 1개에 5개 지점의 시료를 2개씩 투입, 동별 시료 튜브 수는 2개가 되도록 한다. 또한 폐사체를 최소 3수 내지 최대 10수 정도를 확보하여 병리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폐사축이 없을 경우에는 줄고 있거나 침울한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축을 사용할 수도 있다.
 - ※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관찰되는 경우 폐사축을 최소 5수 내지 최대 10수 정도를 확보하여 병리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폐사축이 없을 경우에는 줄고 있거나 침울한 증상을 보이는 의사환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4. 시료 송부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 농장명 :
 - 축주명 :
 - 농장주소 :
 - 연락처 :
 - 계군명 :
 - 채혈년월일
 - 채혈시 주령
 -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별표 3]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법 (제10조 관련)



[별표 4] 오리바이러스성간염 검사법 (제11조 관련)

□ 검사시료: 간 유제액, 종란 배양액 또는 세포배양액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죽은 오리의 간 조직 또는 SPF 발육란 배양액을 사용할 수 있다.
-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 (2) 추출한 유전자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3')	증폭산물
3D	F : AAGAAGGAGAAAATYAAGGAAGG	467bp
	R : TTGATGTCATAGCCCAASACAGC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 검사방법

<RT-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RT	cDNA synthesis	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5 min	1 cycle
PCR	Denaturation	94℃	20 sec	40 cycles
	Annealing	52℃	3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5 min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 결과판정

- 1) 전기영동 결과에서 467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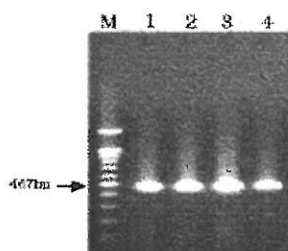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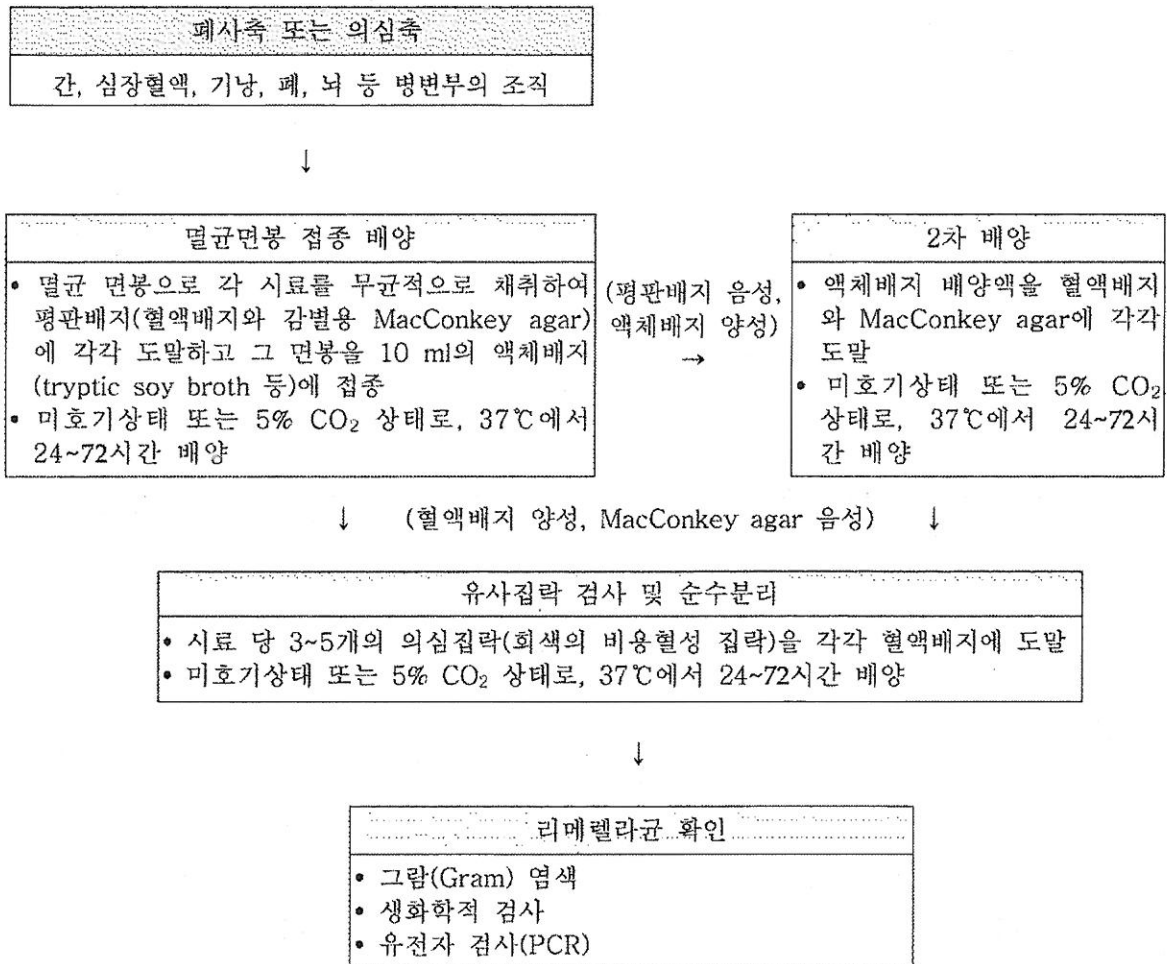


그림1. DHV 특이 유전자 증폭사진

[별표 5] 리메텔라감염증 검사법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

종오리장·부화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일자	거래 대상	수량	구입 판매 구분	구입·판매처			운송인			비고
				대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연락처	차량 번호	

* 거래대상은 종오리, 씨알 및 오리 병아리로 구분(일령 포함)

* 중간상인이 있을 경우 중개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비고란에 기입

[별지 제2호 서식]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

□ 검사기관명 :

□ 시료채취일자 :

□ 검사일자 :

□ 농장현황

농장명		축주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육용도		사육수수	
계군수		동수	

□ 항원검사결과

계군명	일령 (주령)	동명	사육 수수	검사 건수	양성 건수	양성율 (%)	혈청형	최종 판정	비고

□ 항체검사결과

계군명	일령 (주령)	동명	사육 수수	1차 검사			2차 검사			최종 판정	비고
				검사 수수	양성개체수	양성율 (%)	검사 수수	양성개체수	양성율 (%)		
					ELISA			HI (H5 및 H7)			

* 비고란에는 조치사항 또는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실적

구분	농장현황				계군현황				항체검사			항원검사			최종 판정		
	농장명	축주명	소재지	사육형태	사육용도	계군명 (주령)	계군사육 수	동명	동별 사육 수	검사 수	양성개체수		양성 율 (%)	검사 건수		양성 건수	혈청 형
											1차 검사	2차 검사					
계																	
본소																	
지소																	
지소																	
지소																	

* 사육형태란에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종오리 품종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						
가 사 육 시 설	농 장 명		소 재 지			
소 유 자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검사실 내 시역	검 사 의 목 적		시료 채취일	. . .	검사일	. . .
전염병명	시료수			검사방법	검사결과	
	분변	폐사체	혈액/ 종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자	소속 직 성명					
※ 비고 : 상기 검사결과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위해 가축의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시료에 한정되는 것으로 <u>분양·판매되는</u> <u>가축에 대한 검사성적이 아님</u>						
상기 농장의 오리에 대하여는 종오리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 가축방역기관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오리바이러스성간염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 시료채취일자 :☐ 검사일자 :☐ 농장현황

농 장 명		축 주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육용도		사육수수	
계 군 수		동 수	

☐ 항원검사결과

계군명	일령 (주령)	동명	사육 수수	검사 건수	양성 건수	양성율 (%)	최종 판정	비고

* 비고란에는 조치사항 또는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리 메 렐라감염증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 시료채취일자 :☐ 검사일자 :☐ 농장현황

농 장 명		축 주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육용도		사육수수	
계 군 수		동 수	

☐ 항원검사결과

계군명	일령 (주령)	동명	사육 수수	검사 건수	양성 건수	양성율 (%)	최종 판정	비고

* 비고란에는 조치사항 또는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오리바이러스성간염 검사실적

구 분	농장현황				계군현황					항원검사			최종 판정
	농장명	축주명	소재지	사육 형태	사육 용도	계군 명 (주령)	계군 사육 수수	동 명	동별 사육 수수	검사 건수	양성 건수	양성율 (%)	
계													
본 소													
지 소													
지 소													
지 소													

* 사육형태란에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종오리 품종을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리 메 렐라감염증 검사실적

구 분	농장현황				계군현황					항원검사			최 종 판 정
	농장명	축주명	소재지	사육 형태	사육 용도	계군 명 (주령)	계군 사육 수수	동 명	동별 사육 수수	검사 건수	양성 건수	양성율 (%)	
계													
본 소													
지 소													
지 소													
지 소													

* 사육형태란에는 직영 또는 위탁으로, 종오리 품종을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가금(종란) 이동(분양) 승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개동		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 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비늘·육수의 청색증 ☐ 최근 15일 이내 폐사 수수 (수) ☐ 산란율(%)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정밀검사결과		분변		(년 월 일)	
						폐사체		(년 월 일)	
출하 및 운송	출 하 수수(개수)	출하예정 부화장(농장)		운송차량 번 호					
	축 종	품종		운송인 성 명 (구매자)		전화번호			
	운 반 차 량	☐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간 인-----절 취 선-----간 인-----

제 호									
가금(종란) 이동(분양) 승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개동		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 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비늘·육수의 청색증 ☐ 최근 15일 이내 폐사 수수 (수) ☐ 산란율(%)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정밀검사결과		분변		(년 월 일)	
						폐사체		(년 월 일)	
출하 및 운송	출 하 수수(개수)	출하예정 부화장(농장)		운송차량 번 호					
	축 종	품종		운송인 성 명 (구매자)		전화번호			
	운 반 차 량	☐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실시 ☐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